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35680(본소), 2019가단33605(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공동구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30 선고 2019나32382(본소), 2019나32399(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3568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변론 종결 2019. 8. 27

판결 선고 2019. 9.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6%,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2018. 3. 14.부터 연 12% 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을 구하는 외에는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인인 C을 통하여 1kg당 16.5달러의 단가로 오징어를 매입하기로 하고피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C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17달러로 올리면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2019. 2.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물품대금 6,000만 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중순경 중개인인 C으로부터 1kg당 16.5달러에 오징어 약 11톤을 매입하는 제안을 받고 2017. 12. 22. 위 단가로 계산한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페루 D사(이하D'라 한다)가 작성한 오징어 원료 약 22톤 수입에 관한 주문서를 전달받은 사실,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곧바로 총 매입대금의 30%에 해당하는 108,900달러를 D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징어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함께 D로부터 오징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되 피고가 수입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와의 공동구매 약정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하여살피건대,갑 제3,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2017.12. 22. C으로부터 1kg당 16. 5달러의 단가로 오징어 약 22톤을 2018. 1. 17.에선적 예정이라는 D의 주문서를 받은 사실,위 선적예정일이 지나 원고가 C으로부터 D에서 1kg당 17달러로 단가를 변경할 것을 원한다는 통지를 받았고,2018. 1. 29. 단가가 1kg당 17달러로 변경된 D의 주문서를 받은 사실,2018. 2. 초경에서야 D가 오징어20.3톤을 페루에서 선적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중개비로 지급한 600만 원을 2018. 5.30.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선적후 2018. 2. 7. 피고에게 송장을 보냈고,피고 가 2018. 3. 9. 잔금236,200달러를 D에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오징어 20.3톤이 2018. 3. 11. 부산에 도착해2018.3. 13. 반입되고 2018. 3. 14. 통관절차까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원고가 2018. 1. 29. C으로부터 단가가 변경된 주문서를 송부받고도 주문한 오징어가선적될 때까지 단가 변경 또는 선적 지체를 이유로 공동구매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에 대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증인 C은 원고가 단가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단가가 변경된 것을 두고 피고가 공동구매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앞서 본 것처럼 선적된 오징어가 반입되어 수입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피고가 공동구매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와의 약정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6,000만 원의 반환을구하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함께 D로부터 오징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되 피고가 수입 및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 5, 6, 9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매대금 및 수입 비용으로 2018. 3. 14.까지 총 428,069,62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공동구매약정에 따라 그 50%에 해당하는 214,034,812원(= 428,069,625원 ÷ 2, 원 미만 버림)에서 이미 지급한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154,034,8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154,034,812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을 구하나, 위와 같이 통관절차를 마치고 원고가 오징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날이자 피고가 비용을 지급한 날인 2018. 3. 14.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또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을 뿐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0조 단서,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규영